

2020년도 일한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

(학부 1년 코스) 모집요강

일한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학부 1년 코스)은 소정의 일본대학에서 1년간 일본어 능력 및 일본사정, 일본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을 외국인 유학생(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래

1. 일한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이란?

1998년 일한양국정성이 발표한 일한공동선언 '21세기의 새로운 일한 파트너십' 및 공동선언서의 부속서에 따른 정부간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일한이공계 학부유학생 사업'을 발전시킨 형태. 본 '일한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간의 상호교류 확대와 일본에서 연구함으로써 일본과 한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2. 채용 예정 인원 : 25명 정도

3.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의 연구를 통해 일본과 한국간의 가교가 되어 양국 나이가 세계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격 · 조건에 만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1)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일 것.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일본 이외에 생활거점을 둔 일본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2) 연령 : 1990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3) 학력 : 하기 ①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①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 및 귀국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학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자.
- ② 일본어 · 일본문화에 관한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자. 또한, 일본어 · 일본문화 관련 분야 이외를 주전공으로 하는 자 중 학습의 일환으로 일본의 제사정(공학, 경제, 농학, 건축, 미술 등)을 학습하는 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2020년 9월 1일 시점에서 대학에서의 일본어 · 일본문화 학습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자. (다른 대학에서 일본어 · 일본문화 학습력이 있고, 합산하여 일본어 · 일본문화 학습기간이 통상 1년을 초과하는 자는 반드시 일본어 · 일본문화 학습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

(4) 일본어 능력 : 일본 대학에서 일본어로 이수가 가능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

(5) 건강 :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에 따라, 일본 유학에 대해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6) 출발 시기 : 원칙적으로 연수 코스가 시작되는 2주 전부터 코스 개시일까지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원칙적으로 9월 또는 10월)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본인의 사정으로 소정의 기일 이외에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도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부성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한 날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을 시퇴할 것.

(7) 비자 취득 : 일본 입국 전에 주한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새롭게 취득하고, 취득한 재류자격 '유학'으로 입국할 것. 따라서 이미 다른 재류자격(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으로 변경한 후에 신규로 일본에 입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비외국인유학생 신분 종료 후에 다시 '영주자',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신청해도 당연하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

(8) 대상 외 :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에라도 판명이 될 경우 시퇴할 것.

- ① 신청서 제출 시,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인 자. 다만, 도일 전까지 군속인자가 아닌 것이 확실하고, 제1차 선고 합격 발표 전까지 해당 군을 이탈할 것임을 증명하는 관할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일본 입국 후 시퇴한 자도 포함). 또한, 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제도 이외의 2020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한 자
- ⑤ 신청 시 이미 재류자격 '유학'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그리고 본 장학금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시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다만, 일본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시비외국인유학생이라도 장학금 지급기간 개시 전에 수료해 귀국할 것 이 신청 시 확실하고, 재류자격 '유학'으로 새롭게 취득 후

일본으로 입국 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⑥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수급 예정인 자.
- ⑦ 신청 시 이중국적자로 도일 전까지 일본국적을 이탈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⑧ 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이외로 변경한 자.

(9) 장학금 지급 종료 후 귀국·복학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달 내에 귀국하여 일본 입국 시점에 재학 중이던 대학 학부에 복학하여 일본어·일본문화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 확실한 자. 본 귀국·복학 조건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지급개시부터 소급해 장학금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종료 후 귀국·복학이 확실하지 않은 자는 지원하지 말 것.

(10) 기타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 학교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상호 이해에 공헌함과 동시에 수료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수료 후 잉케이트 조사 등에도 협력하는 등, 귀국 후에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일본과 한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 자를 채용한다.

4. 대학배치 및 대학에서의 연수코스

(1) 연수는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코스가이드」에 게재되어 있는 대학 연구코스 중에서 실시한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또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열람 가능)

(2) 수용대학은 문부과학성이 후보자 신청서에 기재된 일본어 능력, 필기시험 결과 및 전문 연수 희망 등을 감안하여 대학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본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소정 기간 내(2020년 8월중순까지)에 수용대학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는다.

(3) 대학에서의 연수는 일본어로 실시한다.

(4)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연수는 각 대학이 개설하는 코스의 연수 목적에 따라 (a)일본사정·일본문화에 관한 연수를 주로 하고, (b)일본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수를 주로 한다. 연수내용은 대학별로 다소 다르나 일본사정·일본문화 및 일본어 관련 특별강의나 전문실습을 학습시키는 것 외에 각 학생의 전공에 따라 관련하는 학부 수업을 받게 된다.

(5) 수용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가 주어진다. 또한 본 제도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연수코스 수료 후에는 장학금 지급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 내에 귀국하여 일본 입국 시점에 재학 중이던 대학 학부에 복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귀국·복학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5. 장학금 지급기간

2020년 10월(또는 연수 코스 개시 월)부터 1년 이내로, 각 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에 필요한 기간.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장학금 등

(1) 장학금 : 월 117,000엔을 지급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학·연구하는 자에 대해서 월 2,000엔 또는 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일본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각 연도별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2) 교육비 :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가 부담한다.

(3) 여비

① 일본입국여비 : 문부과학성은 상기 「3. (6) 출발 시기」에 지정한 소정의 기간 중에 도일하는 유학생에게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내 국제공항(서울[인천, 김포], 부산, 대구, 제주 등)으로부터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여의 여비(항공기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송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판단, 일본 입국 전에 한국 내에서 이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를 '거주지'로 판단하여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서의 항공권을 마련한다. 또한, 본인의 사정에 의해 「3. (6) 출발 시기」에 지정한 소정의 기간 이외에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귀국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연수를 수료하고, 상기 「5. 장학금 지급기간」에 정해진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월 내에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항공권을 지급한다. 항공권은 수용대학이 통상적인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이 귀착하는 한국 내 국제공항(서울[인천, 김포], 부산, 대구, 제주 등)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도항에 드는 특별세, 국적 국내의 여비(항공기 환승비용을 포함한다), 여행보험료, 휴대품·별송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본인의 편의 및 아래와 같은 「7. 장학금 지급정지사항」의 사유에 의해 장학금 지급월 전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월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거나, 그 달 내에 한국으로 귀국했더라도 일본 입국 시점에 재적했던 한국 대학의 학부로 복학하지 않을 경우 귀국여비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7.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①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넘는 징역 혹은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 ④ 대학 학칙 등으로 퇴학정학경고 등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제적되었을 때.
- ⑤ 대학에서의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수용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 재류자격을 새로이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했을 때 또는 「유학」 재류 자격이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 지급을 받았을 때.

8. 선발

(1)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일본어) 및 면접시험 등에 의해 제1차 선발을 실시한다.

(2) 제1차 선고의 결과 통지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로 하고, 채용 여부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전형에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제1차 선발 합격자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문부과학성으로 추천한다.

(4) 문부과학성은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제2차 선발을 행하여 채용자를 결정한다.

(5) 최종적인 채용 여부의 결과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에 통지한다. 채용자에게는 수용대학도 함께 통지한다. 수용대학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덧붙여, 소정의 기간 내(2020년 8월 중순까지)에 수용대학이 결정하지 않을 경우 채용되지 않는다.

9. 신청 서류:

응모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No.	서류종류	원본 1부	사본 1부	비고
①	신청서	○	/	2020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4)
②	배치희망대학신청서	○	/	2020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5)
③	재적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	/	재적학년까지의 모든 학년 (주6).
④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통상 1년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상기 ③에서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통상 1년이상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출. 해당 과목에 표시를 해서 제출할 것.
⑤	재적대학의 재학증명서	○	/	
⑥	재적대학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장	○	/	양식은 자유. 샘플 양식 있음.
⑦	건강진단서	○	/	2020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⑧	일본어능력자격증명서	/	●	일본어능력에 관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본 제출. (주7).

(주1) 하인색 ○의 서류는 필수 제출. 검정색 ●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주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서류가 다른 언어의 경우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것

(주3) 모든 서류의 우측 상단에는 반드시 ① ~ ⑧까지의 신청서류번호(상기 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주4)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선명한 회질로 사진전용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하고, 크기는 4.5×3.5cm로, 상반신 정면 탈모할 것. 또한, 사진의 뒷면에 국적 및 이름을 기입할 것. 신청서 데이터파일에 디지털 화상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인쇄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5)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코스가이드』(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또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열람가능)에서 희망대학을 선택하여, 목차에 적힌 대학 번호와 같이 배치희망대학신청서에 기입한다.

(주6) 일본어·일본문화 관련 이수과목 개수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할 것. 일본어 또는 일본문화 관련 학습기간이 통상 1년이 넘지 않는 저는 신청할 수 없다.

(주7)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레벨, 점수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서 「20. 일본어 능력(자격)」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증명서를 제출할 것. 인터넷으로부터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레벨, 점수 등)을 포함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한다.

10. 주의사항

(1) 일본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의 법률제도의 차이,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 비립직하다.
- (2) 일본입국 후, 장학금을 받는데 한달~한달 반정도 필요하기에, 생활 자금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최소 약 미화 2000달러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비립직하다.
- (3) 장학금은 입국하고 나면, 각자가 개설하는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이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한 장학금 송금은 하지 않는다.
- (4) 일본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5) 숙소
-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가 있다. 다만, 입실 수에 한계가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숙소에 관한 제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연수코스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숙소비용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스가이드에서 확인할 것.
- ② 민간 숙소 등
-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기숙사나 민간 숙소에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 (6) 연수종료 후, 재적하는 한국의 대학에서 단위 인정의 기부에 대해서는 재적 한국 학교에 직접 문의할 것.
- (7) 채용된 경우, 채용자에 관한 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대학연구과학부, 전공분야, 재적기간, 수료후의 진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를,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사업 (유학중의 지원, 유학종료자의 팔로우업, 유학생제도의 개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기관과 공유한다.
- 또한, 채용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 이외)는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수용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등에서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비유학생출신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채용이 결정될 때에 제출 해야 하는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정한 서약서'에 이러한 취급방침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8) 이 모집요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나 그 외의 의문이 있다면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 (9) 본 모집요강이 지정하는 것 외에,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의 실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지정한다.